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. 9. 4 선고 2019가단66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9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ㅅ, ㅇ,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가' 부분 110㎡ 지상 건물(등기부상 '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40.62㎡')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

나. 26,254,200원을 지급하고,

다. 2019. 6. 14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,625,4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박동규

별지